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7
----------	-----

발의년월일 : 2015년 5월 19일

발 의 자 : 김인제 의원

찬 성 자 : 성백진, 김영한, 우형찬, 김기대
최판술, 우창윤, 오봉수, 김희걸
유찬종, 이현찬 의원(10명)

1. 제안이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기여”를 “이바지”으로 하고 “1회 한하여”를 “한 번만”로 하며 “잔여 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고 “2회”를 “두 차례”로 하며 “청취”를 “듣다”로 하고 “비치”를 “보관”로 하며 “수탁기관”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고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통보”를 “알리다”으로 함.(안 제1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기여하기”를 “이바지하기”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1호중 “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으로 하고 “시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로 하고 “잔여기간으로”을 “남은 기간으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2회”를 “두 차례”로 한다.

제13조중 “청취하거나”를 “듣거나”로 한다.

제14조중 “비치하여야”를 “보관하여야”로 한다.

제18조제4항중 “수탁기관은”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8조제6항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통보하고”을 “알리고”으로 한다.

제22조중 “의한다”를 “따른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u>기여하기</u>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인</u> <u>바지하기</u> ----- -----.
제9조(구성) ①~③ (생략)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u>시의회</u> 의장이 추천하는 <u>시의원</u> 3명	제9조(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1. <u>서울특별시의회</u> --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u> --
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u>잔여기간</u> 으로 한다.	10조(임기) ① ----- --- <u>한 번만</u> ----- ----- ----- <u>남은 기</u> <u>간으로</u> ----.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u>2회</u>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 ----- <u>두 차례</u> ----- ----- -----.
제13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u>청취하거나</u>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관계부서의 협조) ----- ----- ----- --- <u>듣거나</u> ----- -----.
제14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u>비치하여야</u> 한다.	제14조(회의록) ----- ----- <u>보관하여야</u> ---.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에 대한 각 안들이 “자구수정”임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김 인 제

